

2025년도 교육활동 보호 추진 계획

백운중학교

1. 추진근거

- 가. 「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및 동 시행령
- 나. 「전라북도 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조례」

2. 추진목적

- 가. 교육활동 및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
- 나.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치유, 회복, 복귀 지원으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

3. 방침

- 가.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한다.
- 나. 교권보호책임관과 업무담당자를 배정하여 운영하여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보호 조치한다.
- 다.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침해 사항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바로 교육지원청과 지원센터에 보고한다.
 - 1) 교육활동 침해 사한 신고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 보고
 - 2)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종료 후 5일 이내 결과 보고서 보고
- 라. 연 1회 이상 교사, 학생,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

4. 세부추진계획

- 가. 학교 교육활동 보호 지원 시스템 구축
 - 1) 학교 교원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 관련 역할 지정
 - 가) 교육활동보호 책임관 : 교장 유**

- ▶ 사안 인지 즉시 적극 개입으로 2차 피해 방지, 사실이 왜곡·와전되지 않도록 조치
- ▶ 학교 대응팀 구성 및 업무 담당자 창구 단일화로 학교 현장의 안정화 조치
- ▶ 응급 상황인 경우 119 신고, 범죄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112 신고
- ▶ 피해 교원 보호 조치 : 관련(침해)자와 분리, 상담 및 안전 조치(공무상 병가, 특별휴가 등)
- ▶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안내

- 나) 업무담당자: 교사 방**

- ▶ 사안 내용, 시기, 관련자(학생인 경우) 등 조사, 관련 학생 학부모 전화 연락
- ▶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내용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안내
- ▶ 피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신고서 접수 후 관할 교육지원청 및 지원센터로 발생 보고(48시간)

2) 교권보호위원회 : 총 5명(교원위원 2명)

위원	성명	구분	위원	성명	구분
위원	오**	생활인권부	위원	윤**	학교운영위원회 대표(3학년)
위원	이**	2학년 학부모	위원	하**	학부모 대표 위원장(2학년)
간사	방**	업무 담당자			

*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시 추후 호선으로 선출

3) 학교교원보호위원회 규정 수립

- 백운중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수립

나.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사안 처리

원칙	절차	업무담당자(교장, 교감, 업무담당 교원 등) 대응요령	피해교원 대응요령	관련 서식
신속한 초기 대응	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인지 즉시 적극 개입 ■ 교육현장 안정화 ■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분리 ■ 업무대행자 지정 ■ 목격 학생 진정시키기 ■ 보호자에게 연락 ■ 중대한 경우 경찰에 신고 ■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가해행위 중단 요청 ■ 주변에 도움 요청 ■ 현장에서 벗어나기 ■ 담당자에게 신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안신고서 (서식 1)
	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(학교장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별휴가, 조퇴, 병가 허가 • 응급처치, 병원후송, 심리상담 지원 • 심리상담, 법률상담, 공무상요양 신청 안내 등 ■ 관할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사안발생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대사안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장관에 보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특별휴가, 조퇴, 병가 신청 ■ 부상 치료 및 심리 상담 지원 요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안발생 보고서 (서식 4)

공정한 교권 보호 위원회 운영	사안 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피해교원 면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피해교원의 의사 확인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문답서, 진술서, 사실확인서 등 작성 목격자 진술, 현장사진 등 증거 수집 조사보고서 작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당시 상황 기록 정리 진술서 등 증거 제출 관련자 조치, 필요한 보호조치 등 의사 전달 심리상담, 법률상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견서 (서식 5) 조사보고서 (서식 6)
	학교 교권 보호 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건 설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 : 학교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요구,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, 위원장이 피해교원, 관련자에게 출석통지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분쟁조정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 피해교원 추가 보호조치 권고 회의록 작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실관계 진술 서면진술 가능 관련자 조치, 추가로 필요한 보호조치 등 의사 전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출석통지서 (서식 7) 조치의결서 (서식 9)
	사안 종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재발방지조치, 추수지도 불복절차 안내·지원 관할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결과 보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피해 회복 및 치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결과통지서 (서식10,11,14) 결과보고서 (서식 15)

다.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

1)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

대상	시기	방법	교육내용
학부모	학부모 총회 학부모 협의회	대면 교육	2025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 주요 내용 안내 : 교육기본법, 초중등교육법, 교원지위법, 아동학대처벌법-교육활동 침해 유형 사례 신설 사항 등
교사	년 2회 이상	대면 교육 의무연수	2025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 주요 내용 안내-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-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-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 교직원 대상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원격 직무 연수 참여 안내
학생	학기별 1회 이상	대면 교육	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,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및 사례, 교권보호 위원회 절차 등 학생 자치회 중심의 학생생활규정 준수

			캠페인을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
--	--	--	--------------------

2)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

- 가) 교육청 분쟁 조정 전문가를 통한 분쟁 조정 대화 모임 주선
- 나) 교원의 개인 전화번호 공개 제한
- 다)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방문 사전 예약 안내 : 상담가능시간 안내, 상담전 사전 담
임 또는 해당교사와의 시간 조정, 민원대응팀(교무실) 구성
- 라)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자체 예산 확보
- 마) 학교 녹음 전화기 사용
- 바) 학부모(보호자) 및 비정기 외부인 학교 출입관리 통제
- 사)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안내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

3) 민원대응팀의 구성

위 원	성 명	구 분	비 고
교원	유**	교장	책임관
교원	방**	교무부장	교무실
교원	오**	학생부장	교무실
직원	윤**	행정실장	행정실

5. 기대효과

- 가.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상호존중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
- 나.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정적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
- 다.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현장 밀착 대응 및 지원으로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